
2026년 안전·보건관리 계획(안)

I. 추진개요	3
1. 관련근거	
2. 수립목적	
3. 기본방향	
4. 적용대상 및 범위	
II. 기본현황	4
1. 재해·사고 현황	
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3. 산학협력단 직원 근무장소 현황	
4. 안전보건 예산현황	
5. 안전보건관리체계	
III. 안전보건관리 세부 추진계획	7
1. 목표 및 세부추진 과제	
2.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공표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시행	
4.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및 공포	
5. 안전보건교육 실시	
6. 위험성평가	
7.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8. 직무스트레스 평가	
9. 다빈치 캠퍼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위탁)	
10. 안전·보건 일상점검 및 인식확산 활동	
11. 안전보건 자료 제작 및 게시	
12. 안전보건 개선조치 비용	
13. 작업환경 측정	
14. 근로자 건강검진(배치전 및 특수검진) 시행	
15. 개인보호구 지급	
IV. 2026년 안전보건 연중 업무계획표	22

I

추진개요

1 관련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2 수립목적

가. 산학협력단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

나.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예방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

다. 안전 중심 경영 체계 확립 및 안전보건 문화 구축

3 기본방향

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정책 사항의 이행

나. 위험성 평가 기반의 선제적 예방관리 강화

다. 근로자 참여와 소통 강화를 통한 참여형 안전보건 문화조성

4 적용대상 및 범위

-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산학협력단장 및 산학협력단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구분	총인원	서울	다빈치	기타	비고
행정 직원	52	48	4	-	25.11.21. 기준
연구원	530	455	61	14	
총인원	582	503	65	14	

※ 산학협력단 전체 직원현황 약 553명('26년 3월 기준)

II 기본현황

1 재해 · 사고 현황('26년 3월 기준)

연도	일자	재해발생형태	인원	피해정도
2022	08.18	업무상 재해	1	통원치료
2024	08.12	업무상 재해	1	입원 및 통원치료

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26년 3월 기준)

가. 산학협력단 본부(서울캠퍼스)

구분	담당업무	소속	성명	선임일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업무 총괄관리	산학협력단	김민성	2026.2.1.
관리감독자	부서 안전·보건 관리 및 감독	각 부서의 장	-	지정예정
안전관리자	양 캠퍼스 안전관리 지도·조언	산학EHS팀	이영화	2025.11.3.
보건관리자	양 캠퍼스 보건관리 지도·조언	산학EHS팀	문정원	2025.11.3.
산업보건의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건강센터장	박보미	2026.3.12

나. 산학협력단 다빈치 캠퍼스

구분	담당업무	소속	비고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지도·조언	고용노동부 안전관리전문위탁기관	선임예정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지도·조언	고용노동부 보건관리전문위탁기관	

※ 위탁업체 업무수행 시 개선조치 등 follow-up에 따른 전담인력 필요

3 산학협력단 직원 근무장소 현황

구분	총계	서울	다빈치	기타	비고
근무장소	278	232	37	9	25.11.21. 기준

※ 산학협력단 전용 관리공간 약 58개소('26년 3월 기준)

4 안전보건 예산 현황

(단위 :원)

항목	구분	세부항목	2026년 예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회의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800,000
	교육훈련비	채용시,근로자,관리감독자 등	34,210,000
	일반용역비	위험성평가, 근골격계, 심혈관계, 직무스트레스	81,968,000
	기타관리운영경비	안전보건 일상점검 및 인식확산 활동	6,100,000
	인쇄출판비	안전표지 및 매뉴얼 제작	12,000,000
	수선비	안전보건 개선조치비용	1,000,000
	소모품비	EHS팀 보호구 구매	700,000
	소계		
연구실안전 관리비	일반용역비	작업환경측정	40,500,000
		특수건강검진	60,000,000
		폐기물처리비	20,000,000
	연구실안전진단	연구실 안전진단	16,680,000
	보호구	연구실 보호구 구매	3,000,000
	소계		
총계			278,958,000

5 안전보건관리체계

□ 산학협력단 안전보건 조직 업무 분장

구분	직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부서의 장으로서 부서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및 감독
안전관리자	산업안전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좌 및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좌 및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산업보건의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근로자	산학협력단의 안전보건 규정 준수, 안전·보건 활동의 적극 참여

□ 산학협력단 안전보건 조직도



Ⅲ 안전보건관리 세부 추진계획

1 목표 및 세부 추진과제

목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문화 정착
-----------	------------------------------------



세부 추진과제

1	<div style="background-color: #d9e1f2;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안전·보건관리 기본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게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관리감독자 지정
2	<div style="background-color: #d9e1f2;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안전한 작업환경 조성</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진행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3	<div style="background-color: #d9e1f2; padding: 5px; margin-bottom: 5px;">근로자 건강증진 도모</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뇌심혈관 및 직무스트레스관리 ·안전보건 게시자료 제작 및 공유 ·개인보호구 지급
4	<div style="background-color: #d9e1f2;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안전보건교육</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에 규정된 안전교육의 이수율 통한 안전문화 확산
5	<div style="background-color: #d9e1f2;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체계적인 산업재해 관리</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대피훈련 실시 ·산업재해 대응절차 안내

2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공표

가. 관련근거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2항
-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나. 추진목적

-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업무관련 상해 및 건강상 장애를 예방

다. 추진사항

- 1) 산학협력단의 특성과 조직의 규모에 적합하도록 경영방침 수립
- 2)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목표 재해율 설정
- 3) 경영방침을 근로자가 숙지하도록 홈페이지 내 안전보건 의견함 사용

라. 기대효과

- 1)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 및 체계적 안전관리 실현
- 2) 안전 중심 경영체계 강화 및 안전의식 제고
-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
- 4) 작업장 내의 위험성을 관리, 예방하여 재해율 감소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시행

가.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나. 추진사항

- 1) 노사·동수로 운영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개선안 도출
- 2) 정기회의는 분기1회 실시 (3, 6, 9, 12월에 시행)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

구분	위원구성(노사동수)
사용자위원 (7명)	산학협력단장, 서울/다빈치 부단장, 산업보건의, 경영지원팀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근로자위원 (7명)	근로자대표(산학감사팀 안재영)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6명 이내 근로자 (연구원 1인 이상 포함)

다. 기대효과

- 1) 산학협력단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 2) 근로자 참여를 통하여 현장 안전보건 개선사항 도출 및 해결
- 3) 안전보건 추진계획, 위험성평가 결과 등의 후속조치 관리

라. 과태료

- 최대 500만원(회의 미실시)

4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및 공포

가.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나. 추진사항

- 1) 산학협력단의 특성과 조직의 규모에 적합하도록 제정 완료
- 2)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 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다)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라)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3)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변경절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예정

다. 추진결과

- 1)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26.2.25)
- 2) 산학협력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시행세칙 제정('26.2.25)
- 3)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방법을 명시
- 4) 2026년 산학협력단 종합안전관리매뉴얼 수립 및 제정('26.3.14)
- 5) 2026년 산학협력단 산업재해예방매뉴얼 수립 및 제정('26.3.예정)

5 안전보건교육 실시

가. 관련근거

-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2)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나. 추진사항

- 1) 근로자들이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안전 교육을 실시
- 2) 직무와 관련한 교육을 이수하여 직무 이해 및 역량을 강화하여 산업 재해를 예방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사무직 외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매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신규 채용 근로자	채용 시 8시간 이상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신규:선임 후 3개월 이내 신규교육 이수 보수:신규교육 이수일 매 2년이 되는날 전후 6개월 사이에 이수

다. 기대효과

-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고 및 문제 발생 시 적절한 대처 능력을 배양하여 재해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라. 과태료(인당)

- 최대 50만원(근로자), 최대 500만원(관리감독자)

6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관리 제거)

가.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나. 추진사항

- 1) 기관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함으로써 위험성을 저감하고자 함
- 2)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선제적 체계적 대응과 산업 재해예방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위험성 평가 실시

3) 수행계획

가) 위험성평가 규정 작성 및 검토

나) 위험성평가 진행

- (1) 사전준비
- (2) 유해·위험요인 파악
- (3) 위험성 결정
-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5)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다. 기대효과

- 실질적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

라. 과태료

- 최대 500만원 ※ 최대 1,000만원 이하로 변경예정(26년 6월 시행)

7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가. 관련근거

- 1)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나. 추진사항

- 1)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 2) 측정 대상 :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구분	실시시기
정기평가	최초 1년 이내 및 매 3년마다 주기적 실시
수시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또는 업무상 질병 인정 시 - 근골격계부담작업 신규 작업·설비 도입 시 - 근골격계부담작업 작업환경 변경 시

3) 수행계획

- 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계획서 작성 및 사전조사 실시
- 나) 근골격계질환 증상 집계·분석 및 공정/작업별 유해요인 조사
- 다) 작업환경 개선계획 수립

다. 기대효과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유해요인을 찾아 개선 및 관리

라. 안전·보건조치 미이행(형사처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8 직무스트레스 평가

가. 관련근거

- 1)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 2)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나. 추진사항

- 1)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나 업무성과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무스트레스 평가 실시
- 2) 측정 대상 :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 작업, 차량 운전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높은 작업을 하는 근로자
- 3) 측정 주기: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
- 4) 수행계획
 - 가) 대상 선정
 - 나) 직무스트레스 평가 진행
 - 다) 결과 분석과 사후 조치

다. 기대효과

- 직무스트레스 요인 및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하여 관리함으로써 스트레스 기인 산업 질병과 안전 위험을 줄이고 근로자 작업 생산성을 제고

라. 안전·보건조치 미이행(형사처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9 다빈치 캠퍼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위탁)

가. 관련근거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 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나. 추진사항

- 1) 다빈치 캠퍼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에 따라 안전 및 보건관리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
 - ※ 공동 선임 가능조건 : 같은 시·군·구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사업장 경계를 기준으로 15km이내 소재하는 경우
- 2) 전문기관의 정기 현장점검 및 자문을 통한 안전보건관리 수행
- 3) 수행계획
 - 가) 다빈치캠퍼스 상시근로자 수 확인 및 법적 선임 대상 여부 검토
 - 나)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선정 및 위탁 계약 체결
 - 다) 월 1회 이상 현장 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 결과를 산학EHS팀에 보고

다. 기대효과

- 1)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법적 의무사항 이행 및 법적 리스크 감소
 - ※ 위탁업체 업무수행 시 개선조치 등 follow-up에 따른 전담인력 필요
- 2)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캠퍼스 안전문화 정착

라. 과태료

- 최대 500만원(미선임)

10 안전 · 보건 일상점검 및 인식확산 활동

가.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나. 추진사항

- 1) 안전캠페인 시행을 통해 구성원의 안전불감증 경감
- 2) 소방, 위험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대상(연구실, 기타 시설 등)의 원활한 사전예방점검 및 환경조성과 유관부서 협력체계 구축
- 3) 위험성평가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계자 정기 간담회 및 교육 실시

다. 기대효과

- 1) 구성원의 자율 안전의식 향상
- 2) 부서 간 협업 강화를 통한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 3) 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개선을 통한 사고 예방 활동 강화

11 안전보건 자료 제작 및 게시

가. 관련근거

- 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2)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나. 추진사항

1) 배포 및 게시 대상

- 가) 산학협력단 내 유해위험 요인이 존재하는 연구실 등 작업장
- 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하여 경고, 비상시 안내가 필요한 장소

2) 수행계획

- 가)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제작 및 안전보건 스티커, 포스터, 매뉴얼 등 제작 계획수립
- 나)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한 현황 파악
- 다) 제작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라) 설비 및 장소별 안전보건표지 부착 및 관리

다. 과태료

- 최대 500만원(법령요지) , 최대 50만원(경고표지 1개소당)

12 안전보건 개선조치 비용

가.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나. 추진사항

- 1) 기관별 유해·위험요인 파악(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등 감소대책 수립
- 2) 수행계획
 - 가) 유해·위험요인 파악
 - 나) 위험성 결정(우선순위 명확화)
 - 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라) 위험성에 대한 근로자 의견청취(상시)
 - 마) 설비 등 개선조치 완료

다 안전·보건조치 미이행(형사처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13 작업환경 측정

가.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나. 추진사항

- 1) 유해인자 노출 측정·평가 및 개선을 통한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2) 측정 대상: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 외 작업장
- 3) 측정 주기: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 된 경우 그 날로 부터 반기
1회 정기적으로 실시
- 4) 수행계획
 - 가) 예비조사
 - 나) 본 측정
 - 다) 시료분석
 - 라) 결과보고서 제출

다. 기대효과

-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

라. 과태료

- 최대 100만원(인당)

14 근로자 건강검진(배치전 및 특수검진) 시행

가.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나. 추진사항

- 1) 근로자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해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직업병으로부터 예방하고자 함

2) 수행계획

가) 일반 건강검진(경영지원팀 실시)

나) 배치전 및 특수 건강검진

- (1) 배치전 및 특수 건강검진 대상자 파악 후 안내 및 접수
- (2) 건강검진 실시
- (3) 결과분석
- (4) 결과통보

다. 기대효과

- 1) 산학협력단 근로자의 건강 확보 및 이력관리
- 2) 조기 진단을 통한 업무 지속성·생산성 향상

라. 과태료

- 최대 30만원(인당)

15 개인보호구 지급

가. 관련근거

- 1)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나. 추진사항

1) 지급 대상

- 가) 연구실 내 유해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39조 관련규정에 따른 보호구 착용이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2) 수행계획

- 가) 보호구 및 보호장비 지급 대상 조사 및 선정
- 나) 보호구 및 보호장비 구입
- 다) 보호구 및 보호장비 지급 및 관리(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등)

다. 안전·보건조치 미이행(형사처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026년 안전보건 연중업무 계획표

구분	세부계획	주기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안전보건 관리체계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공표	변경사유 발생 시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제·개정 시	→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1회/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회/분기	■			■			■			■			
안전보건 교육	직무교육	2년마다	신규(3개월 이내) 및 보수교육 주기 도래 시												
	정기교육(사무직)	6시간/반기		→					→						
	정기교육(비사무직)	12시간/반기		→					→						
	관리감독자	16시간/년		■											
	채용 시	8시간/채용 시		→											
	특별안전보건교육	매년		→											
	MSDS교육	매년		→											
유해·위험 요인관리	위험성평가	1회/년		■											
	작업환경측정	1회/반기		■							■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1회/3년					■								
건강증진	MSDS관리	상시		→											
	보호구 지급	반기 및 신청 시					■					■			
	직무스트레스, 뇌심혈관계	1회/년		→											
	안전보건표지 등 제작	상시		→											
건강검진	일반 건강진단	상시	산단 경영지원팀 실시												
	특수 건강진단	1회/년				■						■			
	배치 전 건강진단	채용 시		→											
산업재해	산업재해 처리	발생 시											발생 시		
	산업재해 분석 및 게시	발생 시											발생 시		
안전점검	안전보건활동 점검	1회/반기						■						■	